##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0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박대출・이종배・강승규

임종득 • 권영세 • 신성범

박정하 • 고동진 • 김태호

이성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이 평균 81세이고, 이중 6·2 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르는 관계로 '예우할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등).

#### 법률 제 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우자"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호"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9. 배우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0.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 3. 추가등록결정

제6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7항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6제1항제2호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를 "배우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가 받을"을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 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 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배우자"란 참전유공자의 배			
	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u>참전유공자</u> 로	제3조(적용 대상자) <u>참전유공자</u>			
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다.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u>참전유공</u>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u>참전유공</u>			
<u>자</u>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u>자 또는 그 배우자</u>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u>.</u>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참</u>	<u>참</u>			
<u>전유공자</u> 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u>하나</u>의 요 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u>참전</u> 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국</u>
   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u>보훈보상대</u> 상자로 등록된 사람
- 3. (생략)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사실을 알려야 한다.

<b>.</b>
③
<u>하나 또는 같은</u>
조 제3호
<u>참전유공자 또</u>
는 그 배우자
<u>.</u>
1
국
_
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
보훈보상대
<u>상자 또는 그 배우자</u>
3. (현행과 같음)
<b>4</b>
<u>참전유</u>
공자 또는 그 배우자
<u>참</u>
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⑤ (생략)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u>참전유공자</u>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 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u>신</u> 설> <신 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 유를 알려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u>3.</u> (생 략)

③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u>참전유공자</u>
<u>또는 그 배우자</u>
1. ~ 7. (현행과 같음)
8.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u>된 경우</u>
9. 배우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10.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
<u> </u>
②
1. • 2. (현행과 같음)
3. 추가등록결정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⑦ (생략) <신 설>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 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 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 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②·③ (생 략)

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의 배제) ① -----

제6	조 <u>(참전명예수당 등)</u> ① ~ ⑦
(	현행과 같음)
<u>(</u>	③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
<u>7</u>	우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u> </u>	내우자에게 제7항에 해당하는
<i>ス</i>	지급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0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란	성으로 정한다.
제8	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_	
_	
_	
_	
_	
_	
_	<u>.</u>
1	. (현행과 같음)
2	<u>刊</u>
	<u> 우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 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 <u>②</u>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u>참전유</u> 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u>제2항</u>에 따라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 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반을
,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
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
를 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4</u>
<u>참전유</u>
공자 또는 그 배우자
<u>제3항</u>

<u>④</u> 국가	보훈부기	장관은	제38	조제
2항에 ¤	i라 예-	우를 정	지하	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circ \rceil$	법의
적용 대	상에서	제외하	러는	- 경
우에는	범죄경	력자료	또는	<u> </u>
정시설	수용 정	보를 곱	<u></u> 기	기관
의 장에	게 요청	할 수 9	있다.	

 제5조에 따른 <u>참전유공자</u>의 등록에 관한 사무

<u>5</u>
제1항 또는 제2항
<u>/110 46 /110 </u>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1 <u>참전유공자 또</u>
는 그 배우자

- 2. 제5조의2에 따른 <u>참전유공자</u>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3. ~ 8. (생 략) 3. ~ 8
- ② ~ ④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